

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

제2342호

2026. 9. 10.(목)



노원구 전경

-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노원소개→알림마당→노원구보)>
-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14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 원 구 청 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정 윤 경
전 화 : 02-2116-3414

차 례

고 시

- 제2026-74호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3
- 제2026-75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6
- 제2026-76호 상계주공7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7

공 고

- 제2026-151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1
- 제2026-151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20

인 사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74호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0호('06.03.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3호('17.11.02), 노원구고시 제2019-125호('19.10.31), 노원구고시 제2020-71호('20.06.25)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되고, 노원구고시 제2006-39호('06.09.11)로 사업시행인가, 노원구고시 제2007-29호('07.8.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노원구고시 제2020-102호('20.9.3), 제2023-43호('23.5.1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노원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월계동 487-17번지 일원
 - 나. 면 적 : 14,929.4m²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월계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이미자)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9길 21, 2층
- 4.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일** : 2026. 9. 7. (월)

5. 관리처분계획 주요 변경내용

가. 건축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내용		비고
		당초	변경	
구역면적		14,820.00㎡	14,929.40㎡	증 109.40㎡
정비기반시설	도로	1,598.00㎡	1,542.70㎡	감 55.30㎡
	공원	883.00㎡	901.50㎡	증 18.5㎡
하천구역		114.00㎡	-	감 114.00㎡
대지면적		12,225.00㎡	12,485.20㎡	증 260.2㎡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20층 아파트 5개동 347세대(임대 39)	지하3층/지상20층 아파트 5개동 355세대(임대 39)	
용적률		249.53%	250.75%	증 1.22%
건폐율		27.49%	26.86%	감 0.63%

나. 분양계획 (변경)

기 정	구분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계약면적 〔㎡〕	세대수				
					계	조합원	일반	보류지	임대
					347	172	133	3	39
	36	36.95	56.24	83.5	68	6	23	-	39
	59A	59.96	81.16	125.39	128	57	68	3	-
	59B	59.94	81.55	125.75	55	13	42	-	-
	84A	84.98	110.12	172.8	77	77	-	-	-
	84B	84.67	110.02	172.47	19	19	-	-	-
	구분		분양면적 〔㎡〕	호수					
				계	조합원	보류지	일반		
근린생활시설		713.3497	12	4	1	7			

변 경	구분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계약면적 〔㎡〕	세대수				
					계	조합원	일반	보류지	임대
					355	172	135	9	39
	36	36.95	57.38	94.72	71	6	20	6	39
	59A	59.96	81.39	141.98	129	57	71	1	-
	59B	59.94	81.77	142.34	56	13	42	1	-
	84A	84.98	110.26	196.14	80	77	2	1	-
	84B	84.67	110.16	195.72	19	19	-	-	-
	구분		분양면적 〔㎡〕	호수					
				계	조합원	보류지	일반		
근린생활시설		707.8060	12	4	2	6			

다. 주택 분양가격

구분	평균 분양가(원)				비고
	기정		변경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36	230,896,000	365,817,727	235,472,000	659,635,000	
59A	361,989,000	527,892,478	362,986,000	935,595,000	
59B	356,057,000	530,393,820	357,033,000	940,015,000	
84A	489,854,000	716,253,435	490,467,000	1,267,524,000	
84B	482,635,000	715,590,703	483,238,000	1,266,347,000	

라. 추정 비례율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조합원 종전자산	27,509,589,445		변동없음
총 수입	152,015,163,043	208,968,626,523	증)56,953,463,480
총 사업비	118,431,047,874	173,382,128,000	증)54,951,173,742
비례율	122.08%	129.36%	증)7.28%

6. 기타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02-2116-393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26-75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300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노원구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가경정 예산안(A)	기 정 예산액(B)	증 감	
				금 액 (C=A-B)	비 율 (C/B)
합 계		1,489,305,194	1,446,526,317	42,778,877	2.96%
일 반 회 계		1,475,153,691	1,432,675,465	42,478,226	2.96%
특별 회계	소 계	14,151,503	13,850,852	300,651	2.17%
	의 료 급 여 기 금	2,884,466	2,594,200	290,266	11.19%
	건 축 안 전	674,679	664,294	10,385	1.56%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1,645,524	1,645,524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4,400	14,400	0	0.00%
	주 차 장	8,685,759	8,685,759	0	0.00%
	금 연 환 경 조 성	246,675	246,675	0	0.00%

※ 세부내역 홈페이지 확인. 끝.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76호

상계주공7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2번지 일대 상계주공7단지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계주공 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1.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가. 구역경계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2번지 일대

나. 구역면적 : 95,812.3㎡

다.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26, 505-2호(상계동, 미도빌딩)

라. 토지등소유자 수 : 2,596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함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 번	직 책	성 명	주소(소유물권)
1	위원장	김찬식	703
2	감사	한지은	710
3	추진위원	이주미	701
4	추진위원	이문옥	702
5	추진위원	고정애	703
6	추진위원	강부성	703
7	추진위원	오영임	703
8	추진위원	정난영	704
9	추진위원	염민선	704
10	추진위원	심보경	705
11	추진위원	오현제	705
12	추진위원	홍상기	705
13	추진위원	박진혜A	705
14	추진위원	서연숙	705
15	추진위원	이재만	705
16	추진위원	윤순희	705

연 번	직 책	성 명	주소(소유물권)
17	추진위원	정민혜	705
18	추진위원	최명원	705
19	추진위원	박현미A	706
20	추진위원	김기연	706
21	추진위원	최진삼	706
22	추진위원	임효상	706
23	추진위원	서명일	706
24	추진위원	김석훈	706
25	추진위원	양선미	707
26	추진위원	한희준	707
27	추진위원	김인학	708
28	추진위원	장미령	708
29	추진위원	김택순	708
30	추진위원	허경순	709
31	추진위원	고명숙	709
32	추진위원	김춘기	709
33	추진위원	이흥섭	709
34	추진위원	김미경	709
35	추진위원	조영웅	709
36	추진위원	전병희	709
37	추진위원	백종인	709
38	추진위원	이지수	709
39	추진위원	이상현B	709
40	추진위원	황성심	710
41	추진위원	이강년	710
42	추진위원	박봉규	710
43	추진위원	김연옥	710
44	추진위원	박은미A	710
45	추진위원	박덕수	710
46	추진위원	오세학	711
47	추진위원	김성원	711
48	추진위원	최낙훈	711
49	추진위원	전병석	711
50	추진위원	정이숙	711
51	추진위원	양미희	711
52	추진위원	이서정	711
53	추진위원	이재원	712
54	추진위원	김운섭	712
55	추진위원	최정선	712
56	추진위원	김갑순	712
57	추진위원	김영옥A	712
58	추진위원	진만진	712
59	추진위원	이경미	712
60	추진위원	최문삼	713
61	추진위원	이석주	713

연 번	직 책	성 명	주소(소유물권)
62	추진위원	곽주연	713
63	추진위원	신승화	714
64	추진위원	박금자	714
65	추진위원	박은지	714
66	추진위원	심규성	714
67	추진위원	정선희	714
68	추진위원	장영신	715
69	추진위원	강복례	715
70	추진위원	강경옥	715
71	추진위원	안화자	715
72	추진위원	장경희	715
73	추진위원	최미정	715
74	추진위원	황선영A	715
75	추진위원	정회철	715
76	추진위원	김경호B	715
77	추진위원	정태정	716
78	추진위원	김한신	716
79	추진위원	이해성	716
80	추진위원	김태선	716
81	추진위원	한기관	717
82	추진위원	박영래	718
83	추진위원	박현자	718
84	추진위원	오필옥	719
85	추진위원	황준선	719
86	추진위원	장명수	719
87	추진위원	권영훈	719
88	추진위원	이미혜	719
89	추진위원	김지영B	719
90	추진위원	염정연	719
91	추진위원	임현동	719
92	추진위원	안형순	719
93	추진위원	조광훈	719
94	추진위원	최문경	720
95	추진위원	박명자	720
96	추진위원	이우상	720
97	추진위원	이회주	720
98	추진위원	강성윤	720
99	추진위원	이희수	720
100	추진위원	김옥희C	720
101	추진위원	김도곤	720
102	추진위원	박수철	720
103	추진위원	임현아	721
104	추진위원	조형선	721
105	추진위원	정영찬	721
106	추진위원	추광호	721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151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1. 폐지이유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종료 및 철거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여가도시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1 청산빌딩 7층 ☎: 2116-0625, FAX: 2116-4668, email : ej081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종료 및 철거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대상아님

2) 성별영향평가 : 대상아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 2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6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숲속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이하 “숲속의 집”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78(월계동 534-1)에 둔다.

제3조(이용대상) 숲속의 집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2.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4조(조직) 구청장은 숲속의 집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숲속의 집에는 시설장 및 운영요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시설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운영요원은 시설을 관리하며 시설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4. 시설장은 필요한 경우 객실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계약직 근로자를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사용범위) 숲속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각종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숲속의 집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
2.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자의 편의 또는 직원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사용허가) ① 숲속의 집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연 2회 이상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기준) ① 숲속의 집의 이용일수는 1박 2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의 이용시간, 이용정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사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

제10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9.10.1.>

1. 영·유아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2. 지역사회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3. 국가유공자 단체 및 장애인 단체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구 주민 및 단체 주중 사용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1. 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전액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9일 전부터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5.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60
6.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40
7.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숲속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숲속의 집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은 재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숲속의 집 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3.09.27>

④ 제1항에 따라 숲속의 집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숲속의 집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9.>

② 삭제 <2016.5.19.>

③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11호, 2016. 5. 19.> 부 칙 <제1211호, 2016. 5. 19.>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07호, 2019. 10. 1.> 부 칙 <제1407호, 2019.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67호, 2023. 9.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1767호, 2023. 9.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노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의견제출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조치
---------	--

인적 기재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	---------------	------	--

(개인/단체)

생년월일

 z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1. 폐지이유

노원 힐링캠핑장 계약 종료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여가도시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1 청산빌딩 7층 ☎: 2116-0625, FAX: 2116-4668, email : ej081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노원 힐링캠핑장 계약 종료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 대상아님
- 2) 성별영향평가 : 대상아님
-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0. 1.]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409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자) 서울시에 외 사설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설치한 캠프장 또는 체험시설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이하 “자연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의 주민
2.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자연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단체

제3조(이용 신청) ①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시작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변경이용) 신청서, 신청 접수증 및 이용 관리 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우선순위) 자연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단, 자연체험시설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체험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자연체험시설 내에서의 흡연 등 다른 사람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연체험시설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 신청을 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자연체험시설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자연체험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① 자연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받는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자(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 시작일 14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반환 불가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6.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제9조(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가 자연체험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09호, 2019. 10.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1409호, 2019. 10.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가족

의 건 제 출 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조치
---------	---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인 사

노원구의회

(발령 제2026-30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정 석 봉	복 직 을 명 함	의 회 사 무 국	지 방 운 전 서 기 보

2026. 9. 7. 字.

노원구의회

(발령 제2026-31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전 예 나	복 직 을 명 함	의 회 사 무 국	지 방 속 기 서 기

2026. 9. 10. 字.